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<신설 2017. 9. 20.>

제　　호

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(정정, 말소) 통지서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(정정, 말소)했음을 통지합니다.

당사자	공동농업 경영체명		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	
처분결과 및 사유				

※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(담당자:　　문의전화:　　)

년　　월　　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　　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